

‘26. 7.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투 자 유 치 과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의 안	2026-64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추진배경

- 지방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시 공급 체계 구축
- 지방투자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투자 이행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 사업기간 : 2026. 5. ~ 12.(8개월)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 주관기관 : (사)전북산학융합원(원장 강승구)
- 참여기업 : (주)한국몰드김제(대표 고일주, 고선영)
 - (참여조건) 2024년 ~ 2027년 기간 중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를 추진하며, 5인 이상 신규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
- 사 업 비 : 360백만원(국비^{50%} 180, 도비^{12%} 43.2, 시비^{28%} 100.8, 자부담^{10%} 36)
 - ※ 교육생 18명 이상 ~ 26명 미만 참여 유형 적용
- 사업내용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인력 채용 지원
 - (기업)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 (교육생)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 이내 지원

《 공 모 개 요 》

- ❖ 공 모 명 :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 ❖ 주 관 : 산업통상부
- ❖ 공모기간 : 2026. 3. ~ 12.(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 선정규모 : 총 7개 과제 내외
- ❖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훈련장려금 지원

3. 협약개요

- 협 약 명 :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 협약기간 : 2026. 5. ~ 12.(8개월)
- 협약일자 : 2026. 6. 12. ※ 협약서상 협약일(사업 추진 기준일) : 2026. 5. 22.
- 체결방식 : 서면협약(전자협약 체결)
- 협약기관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산학융합원, (주)한국몰드김제
- 협약내용 : 참여기관별 역할 및 사업비 분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
 - 산업부(국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지방비 분담), 전북산학
융합원(사업 운영), (주)한국몰드김제(교육과정 참여 및 채용 연계)

4. 추진상황

- 투자기업 대상 사업 참여 의향 조사(7개 기업) --- '26. 2. 23. ~ 2. 24.

기 업 명	투자기간	신규 고용	업종	참여 여부	비 고
(주)석경에이티	'24.6. ~ 26.6 (2년)	15명	기타기초무기화학 물질제조업(20129)	부	- 공정상 비밀유지 사항 있음 ☞ 본사 직접 교육 예정
(주)참고을	'25.4. ~ 26.3. (1년)	20명	식물성유지제조업 (10412)	부	참여 의사 없음.
센트러스트 전자재료(주)	'25.8. ~ 26.12. (1년)	15명	전자재료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부	- 공정상 비밀유지 사항 있음 ☞ 본사 직접 교육 예정
(주)케이지에프	'25.8. ~ 25.12. (6개월)	4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	부	채용 완료
(주)도어코코리아	'27.3. ~ 미정	81명	플라스틱창호 제조업(22223)	부	'26. 고용계획 없음.
수성특장(주)	'25.12. ~ 26.6. (6개월)	11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	부	참여 의사 없음.
(주)한국몰드김제	'26.2. ~ 28.6. (1년 6개월)	20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여	'26년부터 고용 예정

- 산업부 사업공고 ----- '26. 3. 27.
- 공모 대응 계획(안) 보고 ----- '26. 4. 8.
- 공모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26. 4. 17.
- 사업 선정 평가위원회(발표 평가) ----- '26. 5. 12.
- 사업 선정평가 결과 통보("선정") ----- '26. 5. 15.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26. 5. 29.
- 업무협약 추진계획(안) 보고 ----- '26. 6. 12.
- 협약체결*(전자협약) ----- '26. 6. 12.
- 협약서상 협약일 : '26. 5. 22. / 실제 전자서명일 : '26. 6. 12.
- ※ 협약서상 협약일은 사업 추진 기준일이며, 실제 협약은 전자서명으로 완료

5. 금후계획

-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수행 ----- '26. 6. ~ 12.
- 국비(산업부) 교부신청 ----- '26. 7월 중
-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시→전북산학융합원) ----- '26. 8월 중

6. 기대효과

- (지역산업 활성화) 지방 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신규 투자 및 사업 확장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
-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 지원
- (인구 유출 방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
- (지역 인재 양성) 기업수요 기반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지역 인력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기반 마련

7. 따로붙임

-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 2026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목표 및 내용
- (주)한국몰드김제 현황
- 2026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협약서
- 비용추계서
- 방침결정문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김제시가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투자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투자 이행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회는 「김제시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협약개요

- 협 약 명 :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 협약기간 : 2026. 5. ~ 12.(8개월)
- 협약일자 : 2026. 6. 12. ※ 협약서상 협약일(사업 추진 기준일) : 2026. 5. 22.
- 체결방식 : 서면협약(전자협약 체결)
- 협약기관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산학융합원, (주)한국몰드김제
- 협약내용 : 참여기관별 역할 및 사업비 분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
 - 산업부(국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지방비 분담), 전북산학
융합원(사업 운영), (주)한국몰드김제(교육과정 참여 및 채용 연계)

2. 사업내용

- 사 업 비 : 360백만원(국비^{50%} 180, 도비^{12%} 43.2, 시비^{28%} 100.8, 자부담^{10%} 36)
- 사업내용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인력 채용 지원
 - (기업)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 (교육생)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 이내 지원

붙임2

[김제시] 2026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목표 및 내용

□ 목표 및 전략

- (목표) 지방 투자기업의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지자체와 기업 협력 강화	인력수요 부합 인재양성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공동 수립 · 특화산업환경 조성, 현장 신속 대응	· 인력 확보와 일자리 매칭으로 조기 안정화 · 인력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제도적 장치와 지원 체계 구축 ·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도출

○ 정량적 목표

지표	참여기업(㈜한국몰드김제)				주관기관(전북산학융합원)		
	교육신청자 수	교육수료자 수	취업자 수	고용유지율 (입사 6개월후)	교육생 만족도	취업자 만족도	참여기업 만족도
목표	24명	21명	18명	100%	85점	85점	85점

※ 성과지표

- 채용 목표 달성률 85%(신규고용 수 / 채용 목표 수)
- 교육 이수율 80%(교육 수료자 수 / 교육 신청자 수)
- 만족도(교육생·기업) 80점 이상

○ 정성적 목표

최종 목표	세부사업목표
현장맞춤 교육운영	○ 참여기업이 필요한 인재 확보
	○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
인력미스매치 해소	○ 기업 니즈에 맞는 인력 매칭
	○ 관내 일자리 기관 간 고용 협업 체계 구축
사업성과 확산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투자기업 인식 제고
	○ 사업 지속성 확보

□ 사업 수행 세부 내용

- (기본교육)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전박적인 이해를 위한 과정
 - 기업과 교육생의 네트워킹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기본소양 등에 대한 기초과정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기업에서 요구하는 필수교육과정
- (현장교육) 현장에서 수행하게 되는 직무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실습 과정 병행
- 교과목(안)

참여기업명	기업 교육 수요	필요한 교과목	교육시간
(주)한국몰드김제	OT (지역·산업의 이해)	기업 오리엔테이션 김제시 문화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이해	6
	소양교육	다문화 이해 예절교육	4
		직업기초능력	6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
		개인정보보호교육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산업안전보건	8
	직무교육	사출성형의 이해	4
		사출성형 공정 이해(이론)	4
		사출성형조건 설정	4
	기업 맞춤형 실습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및 5S	100
		생산이력추적 및 기록관리 실습	
		사출성형 공정 이해	
		사출성형 과정 이해	
		사출금형 기초	
		사출성형 조건	
		사출성형 부품기술 및 불량 사례	
		사출성형 실무	

□ 최종 성과물

○ (맞춤형 교육생 채용 연계)

- 맞춤형 직무 훈련 실시로 수료 후 기업 현장 즉시 투입

○ (지방 투자 활성화 · 지역 고용 증대)

- 지역민 우선채용으로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실질적 기여
- 공장준공 시기 사전교육을 마친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순조로운 가동 지원

○ (경제적 지원체계 마련)

- 인력모집에 따른 투입비용 절감과 현장인건비 절감효과 발생

○ (주)한국몰드김제 취업 시점 및 인력 수(안)

교육생 선발시기	선발인원	인턴 계약	채용확정	채용인원	비고
1차 (7월초)	8명	7월말	8월초	18명	공장가동 및 경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차 (8월말)	8명	9월중	9월말		
3차 (10월말)	8명	11월중	11월말		

□ 기업 현황

- 대표자 : 고일주, 고선영
- 법인설립 : 2015. 6. 11.
- 본사 : 김제시 백산면 대동공단2길 38(대동농공단지)
- 규모 : 중소기업
 - ('25년 기준) 매출액 : 314.4억원 / 고용 : 89명
- 주업종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 주생산품 : 자동차용 SMC* 복합 소재
 - *SMC(Sheet Mold Compound) :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료(열경화성 수지 + 유리섬유)
- 주거래처 : 현대자동차(주)전주, 현대모비스(주), 동해금속(주)
 - ※ 현대기아 자동차, 현대모비스 1차 협력사('24년 현대차 상용 부문 '올해의 협력사' 선정)

□ 투자 개요

- 투자위치 : 지평선산업단지(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68)
 - 부지면적 : 16,528㎡(약5,000평) ※ 기존 공장 연면적 : 3,208.03㎡
 - ※ 기존 공장(舊 레이머티리얼즈)의 부지 및 건축물 매수 후 투자
- 투자유형 : 신설(관내기업)
- 투자기간 : 2026. 2. ~ 2027. 8.(1년 6개월)
- 투자규모
 - 투자액 113.2억원 / 건축 연면적 2,960.1㎡(약 895평) / 신규 고용 20명
- 주업종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 주생산품 : 자동차용 사출** 부품
 - **용융된 플라스틱을 금형에 주입해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 공법(범퍼, 커버류)
- 투자사유
 - 주요 매출처인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의 2027년 친환경차(LT2) 양산에 따른 사출 부품 생산 물량 증가 대응을 위한 투자

□ 추진 상황 및 금후 계획

- 투자협약 체결(전북도↔김제시↔한국몰드김제) '25. 10. 29.
- 투자사업장 공장착공 '26. 2. 25.
- 공장 준공 '26. 8.

□ (주)한국몰드김제 위치도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협약서

- 과 제 명 : '26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전북 김제)
- 총 수행기간 :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8개월)
- 협 약 기 간 :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8개월)
- 사업비(당해연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전북산학융합원	(주)한국물드김제
정부출연금		180,000	0
지방비		144,000	0
민 간 부담금	현금	0	3,600
	현물	0	32,400
	소계	0	36,000
합 계		324,000	36,000

- 총괄책임자
소속 : (사)전북산학융합원 직위 : 원 장 성명 : 강 승 구
- 협약 대상자
전담기관 :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전 윤 중
지방자치단체 :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자) 김 관 영
지방자치단체 :
(기관명) 김제시 (대표자) 정 성 주
주관기관 :
(기관명) (사)전북산학융합원 (대표자) 강 승 구
참여기관1 :
(기관명) (주)한국물드김제 (대표자) 고 일 주, 고 선 영

위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협약의 목적 및 목표)

- ①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행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② 본 협약에 의한 수행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제2조(관리규정 및 용어의 정의 등)

- ①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 운영요령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7. 별도로 정하는 관련 법령 및 부속 규정 등
- ②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및 청렴의무 준수)

- ① 본 협약에 의한 과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에 의한 과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를 사업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2. 주관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진도점검·최종평가 및 각종 현장실태조사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주관기관의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그밖에 1호부터 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하 “지방비”라 한다)의 지급
 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제39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및 제46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환수 금액의 회수
- ③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 부담금 및 지자체 부담금의 부담
 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5. 진도실적·연차·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지역발전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11.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3.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 ④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 부담금 및 지자체 부담금의 부담
 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5. 진도실적·연차·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지역발전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11.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3.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 ⑤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업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전담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 명의로 개설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전용 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명	정부출연금 지급 금액
주관기관	(사)전북산학융합원	180,000
참여기관1	㈜한국물드김제	0

② 지자체는 지자체부담금(이하 ‘지방비’라 한다)을 지급일자 또는 입금 협약일 전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전담기관 RCMS 계좌(예금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로 입금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지자체명	지방비 지급일자 및 금액	
		지급일자 (입금협약일)	금액
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2026. 12.	43,200
	김제시	2026. 10.	100,800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각자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RCMS 계좌(예금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로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명	민간부담금			지급일자 및 금액(현금)	
		현금	현물	계	지급일자	금액
주관기관	(사)전북산학융합원	0	0	0	-	0
참여기관1	㈜한국물드김제	3,600	32,400	36,000	2026. 8.	3,600

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 라.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마.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전담기관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바. RCMS를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결제계좌가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RCMS에 등록하여 해당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해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업비카드로 지정하고, 사업비요령에 따라 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은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은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정산금을 사업비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반환하거나 국고 납입 처리하여야 한다.

④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기하여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고는 다음 어느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발송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등록된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④그 밖에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은 관리규정에 따른 해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전담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전담참여기관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사유를 근거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하여 관리규정에 따른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제한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이의 신청)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2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요령, 사업비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관리규정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서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장관, 전담기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 수행·결과에 대해 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보고서 등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담기관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③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경쟁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제제부가금)

장관은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제제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학생 지원금의 환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학생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지급·관리·환수 수행의 의무를 지니며, 환수 상황 발생 시 학생지원금의 환수, 전담기관 통보·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18조(안전관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들이 교육 현장실습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니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전담기관 보고 후, 활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9조(연구장비의 관리)

-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입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관리에 관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획, 심의, 구매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비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

- ① 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부의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
- ③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전담기관, 지자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납입 약약서 각 1부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각 1부
5.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실시간 지급 이체 동의서 각 1부
6. 사업비 청구서 각 1부(별첨:사업비 통장, 사업자등록증)
7. 사용인감계 각 1부(별첨:인감증명서)
8.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9. 사업비 통제·관리 약약서 및 방안 각 1부(별첨:사업비 통제 및 관리방안)
10. 공장사용승인등록 완료(예정) 약약서
11.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각 1부

2026년 5월 22일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 :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원장 전윤종 (인)
(주소)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한국기술센터

주관기관 :

(기관명) (사)전북산학융합원 (대표자) 원장 강승구 (인)
(총괄책임자) 원장 강승구 (인)
(주소) (540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참여기관1 :

(기관명) ㈜한국몰드김제 (대표자) 고일주, 고선영 (인)
(책임자) 유승민 (인)
(주소) (5432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대동공단2길 38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명)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자) 김 관 영 (인)
(주소)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명) 김제시 (대표자) 정 성 주 (인)
(주소)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통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 관련 조항 : 협약서 제5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6. 5. ~ 12.
- 추계내용
 - 직접비 : 305,000천원
 - 인건비(내부인건비) : 130,400천원
 - 연구활동비 : 165,600천원
 - 교육훈련비 : 77,300천원, 교육훈련 장려금 : 66,000천원, 사업운영비 : 22,300천원
 - 연구시설·장비비 : 9,000천원(연구재료 구입비)
 - 간접경비 : 55,000천원

나. 추계결과

- 총 소요액 : 360백만원(국비 180, 도비 43.2, 시비 100.8, 자부담 36)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자체재원('26년 제1회 추경)

3. 작성자 : 투자유치팀장 구옥주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4039	주무관	투자유치 팀 장	투자유치 과 장	새만금경제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결 재
보존기간	년	김은이	구영주	유광호	이영수	전 결	이영서	
결재일자	2026. 4. 8.	협 조	국가예산팀장 정근호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예산팀장 정근호	

지방청에서 서한으로 이어
비상하는 김제

- 지방 투자 촉진 및 투자기업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공모 대응 계획(안)



김 제 시
투 자 유 치 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 686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5. 6. 12.
공개여부	부

지방투자유치과장 김제
비상하는 김제

주무관	투자유치 팀 장	투자유치 과 장	새만금경제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결 재
김은이	구원국	유향근	신상우	이형석	정성민	
협 조						

- 지방 투자촉진 및 투자기업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
2026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 업무협약 추진 계획(안)



김 제 시
투 자 유 치 과